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6. 23 선고 2022가단537976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6. 9.

판 결 선 고 2023. 6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3. 4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류일건

별지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관계

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가 신용보강하는 대출 및 그 대출채권과 그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관리, 운용 및 처분을 영위하는 회사로서, 원고는 2011. 4. 8. 소외 주식회사 E와 '음식물/슬러지 건조시설 구축사업' 관련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위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자입니다.

[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갑 제2호증 대출약정서 참조]

2. 대출약정

원고가 2011. 4. 8. 소외 주식회사 E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,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출약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[갑 제2호증 대출약정서 참조]

다 음

- 1) 대출약정일 : 2011. 4. 8.
- 2) 대출약정금 : 3,500,000,000원 (대출약정서 제2장 제3조)
- 3) 대출만기일 : 2016. 4. 8. (대출약정서 제1장 제2조 제8항)
- 4) 지연손해금 : 연 19% (대출약정서 제5장 제17조)
- 5) 채무불이행사유 : 차주가 대출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(대출약정서 제10장 제30조 제1항 제1목)
- 6) 관할법원합의 :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 (대출약정서 제12장 제39조 제2항)

3. 채무불이행 및 대출잔액

소외 주식회사 E는 주채무자로서 대구지방법원 2016하합106호 파산선고를 득하고 2018. 1. 23. 파산종결 결정을 받았으며, 소외 주식회사 D는 신용보강자로서 2020. 5. 29. 최종적으로 184,881,647원을 변제하는 등 대출약정 채무자와 피고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은 2022. 11. 30. 현재 대출금 3,500,000,000원 중 금 1,259,003,573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잔액 2,205,996,427원의 원리금을 2020. 5. 29.(최종변제일)부터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
[갑 제3호증 대출회수현황표 참조]

4. 소결 (일부금 청구)

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출 원금 잔액 2,205,996,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4. 9.(대출만기일 다음날)부터 완제일까지 연 19%(약정된 연체이자)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, 원고가 확인해 본 결과 피고는 뚜렷한 책임재산이 없어 위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100,000,000원에 대하여만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